

논문 2023-4-6 <http://dx.doi.org/10.29056/jsav.2023.12.06>

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의 수익배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박천웅*, 전진영**, 김덕희***, 김시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fit Distribution Settlement of Literature, Music and Art Works Used in Broadcasting

Cheon-Woong Park*, Jin-Young Jeon**, Duk-Hee Kim***, Kim, Siyeol****†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문학예술저작물의 수익배분 개선을 위해 국내 방송시장 규모,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저작물의 보호 규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문학예술저작권단체의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외 문학예술저작권단체의 방송사용 저작물 징수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방송된 TV와 라디오 21개 방송채널 34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문학예술 분야의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확인이 불가능한 저작물도 일부 발견되었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의 수익배분 개선을 위해서는 저작물 확인 기술개발과 공정한 저작물 수익배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profit distribu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sed in broadcasting, we examined the size of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and global copyright fees, and confirme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works.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of broadcasting fees by domestic literary and artistic copyright organizations were reviewed, and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of works for broadcasting companies by overseas literary and artistic copyright organization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profit distribu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used in broadcasting, we examined the size of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and global copyright fees, and confirme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works.

한글키워드 : 방송, 저작물, 정산분배, 저작권, 모니터링

keywords : Broadcasting, Works, Profit distribution, Copyright, Monitoring

* 약학정보원(경영학박사)

** 국립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박사과정)

*** 인천재능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 교신저자: 김시열(email: sykimlaw@hanmail.net)

접수일자: 2023.11.22. 심사완료: 2023.11.28.

게재확정: 2023.12.20.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방송 콘텐츠의 유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지상파 중심의 일방향 방송환경은 디지털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공존하고 있으며, IPTV, OTT 등 신규 방송 플랫폼이 거대시장을 차지하면서 방송에서 음악, 문학예술 등 저작물 활용이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가 현재 방송 환경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을 통해 생산되는 저작물의 복제 및 송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방송 저작물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어떠한 사람(혹은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지 확인 및 감시할 수 없고, 저작물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지역별 문화적 환경, 법률 등에 대한 전문지식 미흡으로 국내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권리정보, 이용방법 및 제한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 제작자는 개별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표준 이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용료 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저작물 중에서 창작주의 원칙에 따라 창작한 어문 저작물 중 방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설, 시조, 동화 등 문학예술 저작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수익배분을 위한 국

내외 신탁단체의 징수 규정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배분 체계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방송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수익배분 체계

2.1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범위와 특성

베른협약 제2조에 따라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보호의 범위로 삼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각색물, 번역물·편곡물·개작물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협약 제11조의2에 따르면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기호, 소리 또는 이미지, 저작물의 방송물을 확성기나 송신하는 기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공중에 전달하는 것 등 문학예술 저작물의 방송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재산권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번역권, 공개 낭송권, 각색·편곡·개작권, 영화적 각색 및 복제, 배포권 등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하나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베른협약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 등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대여권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며,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2].

WIPO 저작권조약은 베른협약에서 의미하는 특별협정으로 조약체결 당사자들에게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베른협약이 규정한 의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또한 문학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베른협약이 규정한 재산적 권리(복제권, 공연권, 번역권, 공제, 낭송권, 각색·편곡·개작할 권리, 영화적 각색 및 복제 그리고 그 영화의 배포권, 추급권 및 방송권 등) 이외에 공중이용 제공권을 포함한 유선 또는 무선방법에 의한 공중전달권을 향유한다[3].

저작권법에 따라 문학예술 작품 저작자는 창작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다만 법인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 등의 기획이 필요, 2) 업무 종사자가 창작, 3)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될 것이 예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학예술 작품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 저작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2.2 방송시장 규모와 현황

2022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4]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58조 5,536억 원 규

모로 나타났고, 방송사업 매출은 19조 4,016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1에 따르면 IPTV가 4조 6,368억 원, 지상파방송이 3조 9,882억 원의 방송사업 매출을 보였다. 또한 종합유선방송도 1조 8,542억 원의 방송사업 매출을 보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총 7조 5,520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3조 7,221억 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3조 171억 원의 방송사업 매출을 보였다.

표 1. 2021년 방송시장 현황
Table 1. Broadcasting market in 2021

구분	매출액(원)	방송사업매출(원)
지상파방송	4조 6,903억	3조 9,882억
지상파DMB	56억	49억
종합유선방송	2조 7,138억	1조 8,542억
중계유선방송	30억	5억
위성방송	6,554억	5,210억
IPTV	34조 7,192억	4조 6,368억
IPTV콘텐츠(CP)	2조 2,833억	8,440억
방송채널사용	13조 4,830억	7조 5,520억
홈쇼핑PP	5조 8,551억	3조 171억
일반PP	5조 9,006억	3조 7,221억
데이터홈쇼핑	1조 3,564억	8,029억
데이터PP(DP)	3,709억	99억
합계	58조 5,536억	19조 4,016억

이외에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OTT시장은 2016년 315백만 달러에서 2020년 832백만 달러로 늘었으며, 유료방송 대비 매출액 비중도 2016년 9.2%에서 2020년 22.1%로 상승했다[5].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3[6]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저작권 사용료 총징수액은 120억 7,000만 유로(한화 약 17조 2,007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21년에 비해 26.7%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2022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2021년도에 비해 5.3% 증가한 2억700만

유로(한화 약 2,950억 원)로 수준이다.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증가율은 음악 28.0%, 시청각물 11.0%, 시각미술 12.8%, 드라마 89.4% 증가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2022년 저작물 유형별 방송사용료 징수액은 음악 분야가 35억 5,500만 유로로 87.99%를 나타냈고, 시청각 저작물이 4억 4,500만 유로로 11.01%, 드라마는 1,900만 유로로 0.47%, 시각미술 저작물은 1,800만 유로로 0.45%, 마지막으로 어문 저작물은 330만 유로로 0.08% 순이다. 이처럼 어문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사용료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개 유형의 저작물이 방송 이용으로 징수된 총징수액은 40억 4,000만 유로(한화 약 5조 7,573억 원)이다[7].

표 2. 저작물 유형별 방송사용료
Table 2. Broadcasting usage fees by type of copyrighted work

구분	방송사용료 징수액 및 점유율	
	징수액(€)	점유율
음악	3,555,000,000	87.99%
시청각	445,000,000	11.01%
드라마	19,000,000	0.47%
시각미술	18,000,000	0.45%
어문	3,300,000	0.08%
합계	4,040,300,000	100%

2.3 저작권 사용료 징수 체계

저작권 사용료는 실제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징수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인 개별정산과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정하여 저작물 이용내역과는 무관하게 정산하는 포괄정산방법이 있다[8].

개별정산은 이용내역에 따라 사전에 책정된 저작권료를 징수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다량의 저작물이 존재하고 저작물

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내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일반적으로 포괄정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등 방송과 같이 많은 양의 저작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상하지 않은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9].

2.4 국내외 신탁단체의 방송 저작권료 징수 규정 현황

2.4.1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2020.2.14.)에 극본의 방송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재방송료에 대한 규정, 제5조는 네트방송사용료에 대한 규정, 제6조는 복제·배포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송 사용료(제7조)와 방송사용료 면제(제9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방송료는 방송국에 따라 기본극본료의 15%~30%의 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트방송사용료는 방송국에 따라 기본극본료의 13%~15%의 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홍보,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교육목적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등 면제에 대한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징수한 사용료 총액은 67억 원 정도이다[10].

2.4.2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2021.09.12.)에 따라 협회가 관리하는 영화시나리오 등의 방송사용료 구분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완성된 영화를 TV에서 방영하거나 유선방송에서 방영하는 경우 등 영화제작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4%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격의 4%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제, 학술연구, 교육 등 비영리·공익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입이 제작비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2021년에 징수한 사용료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며, 사용료 및 보상금이 480만 원 규모이다[11].

2.4.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규정’(2023.05.09) 제3장 방송사용료에서 지상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지상파 DMB,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및 이동방송서비스 등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홈쇼핑채널, 종합편성채널 및 이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2021년 징수한 사용료 총액은 419억 원 규모이고 타 저작권 신탁단체에 비해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해외에서 징수한 사용료는 58억 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2].

2.4.4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규정’(2023.09.15.) 제3장 방송사용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마찬가지로 방송 종류별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의 방송사용료 징수규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송사용료 규정과 동일하나, 조정계수의 경우 협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징수한 사용료 총액은 9.45억 원 규모이다[13].

표3은 국내 주요 신탁관리단체별로 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용료 징수대상과 징수액이다. 이를 보

면 음악 분야가 어문에 비해 방송사용료 징수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신탁관리단체의 방송사용료 징수대상 및 징수액

Table 3. Broadcasting usage fee collection targets and fees

(단위: 천 원)

구분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방송 유형	재방송 네트방송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지상파 DMB 중계유선방송 이동방송서비스	
방송 사용료 징수액	6,711,881	41,955,127	945,090

2.4.5 일본출판저작권협회

일본 내의 어문·사진·미술·도형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로 방송 등에서 이용은 ‘일본방송협회의 방송’과 ‘일반 방송사업자 등 방송 등’에서의 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일본방송 협회의 방송 등에서의 이용은 전국 중계에 있어서 이용은 저작물 1건 1회 방송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텔레비전은 10만엔 이상 24만 8,000엔 이내이고, 라디오는 4만 2,000엔 이상 12만 5,000엔 이내로 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전국 중계 이외의 방송에서 있어서의 이용은 전국 중계 사용료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각색·번역·구성·편집 등도 별도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방송에서의 이용, 저작물의 일부분 및 소품 등의

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 방송사업자 등 방송 등에서의 이용은 전국네트방송은 저작물 1건 1회에 방송시간 30분 기준으로 텔레비전은 9만 5,000엔 이상 25만엔 이내, 라디오 방송은 4만엔 이상 9만 5,000엔 이내로 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전국네트방송 이외의 방송이용, 재방송, 저작물의 일부, 소품 등의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다.

2.4.6 독일 VG Wort

VG Wort의 방송사용료는 TV와 라디오를 구분하여 출판 저작물의 방송낭독, 발행 오디오북의 방송낭독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TV의 경우 출판 저작물 방송낭독 사용료는 1백만 가구 기준 분당 5.57유로이며 최대 2천만 가구 이상인 경우 분당 182.34유로이다. 발행 오디오북의 방송낭독 사용료는 1백만 가구 기준 분당 8.52유로이며 2천만 가구 이상인 경우 분당 273.54유로이다. 라디오는 출판 저작물 방송낭독 사용료는 지역 또는 지방방송은 분당 6.84유로, 주 차원의 방송은 분당 16.62유로, 연방 차원의 방송은 분당 33.84유로이고, 발행 오디오북의 방송낭독 사용료는 지역 또는 지방방송은 분당 10.38유로, 주 차원방송은 분당 24.78유로, 연방차원 방송은 분당 50.58유로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VG Wort는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사의 사용료나 보상금을 일괄(포괄) 계산하지 않고, 고정 요율과 어문 기고의 방송 시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VG Wort는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고정 요율과 어문 기고의 방송 시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한 것은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문학예술 저작물의 방송 이용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3.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 표시 등 방송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회에 걸쳐 방송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하였다.

3.2 조사 범위 및 방법

1차는 2023년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총 4개월) 6개 TV 채널, 15개 라디오 채널 등 총 21개 방송 채널에서 2021년에서 2022년에 방송된 34개 방송 프로그램(3개 TV 채널 9개 프로그램, 10개 라디오 채널 2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기간은 2021년과 2022년 상·하반기 각 1개월씩 총 4개월로 방송 시간은 TV 130시간, 라디오 310시간 등 440시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 조사는 8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와 동일한 대상(21개 방송 채널 34개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모니터링 기간(총 4개월)은 2021년과 2022년 상·하반기 각 1개월씩 총 4개월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1차 조사와 다른 점은 2차 조사에서는 방송 모니터링 시간을 TV 310시간, 라디오 130시간으로 반대로 설정하였다.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합치며 TV와 라디오 모니터링 시간이 모두 440시간으로 총 880시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사전 협의 및 지정한 34개 프로그램 880시간에 대하여 1,840개의 녹화영상 등 파일을 정제, 확보하여 영상을 시청, 청취하면

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3.3 저작물 방송 이용 실태조사 결과

모니터링 결과 녹화파일 1,840개 중 981개 파일인 53.31%에서 저작물이 확인되었으며, 방송 시간으로는 292시간 36분인 33.25%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와 같이 총 2,367건의 저작물이 검출되었으며, 라디오는 10개 방송 채널에서 2,303건의 저작물 이용이 확인되었고 TV는 2개 방송 채널에서 64건이 확인되었다.

표 4. 방송 채널별 검출 건수

Table 4. Number of detections per broadcasting channel

구분	채널명	검출개수
Radio	BBS R	20
	CBS R	26
	FEBC 극동방송 R	15
	KBS classic FM	210
	KBS 1R	325
	KBS 3R	1,058
	MBC 표준FM	70
	SBS 러브FM	384
	TBS 교통방송 R	145
	경인방송 R	50
TV	소계	2,303
	KBS1	30
	MBC	34
	SBS	-
	소계	64
총계		2,367

표5와 같이 라디오 저작물 2,303건 중 168건은 저작물의 종류와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저작물이 119건이며,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저작물이 49건이다.

표 5. 미확인 저작물 검출 건수

Table 5. Number of unidentified works detected

구분	내 용	건수
일부정보 확인	저작물명은 확인되나 작가정보 미확인	81
	작가정보는 확인되나 저작물정보 미확인	7
	저작물, 작가 정보 모두 미확인	8
	Reading으로 저작물 확인	23
	소계	119
모든정보 미확인	-	49
총 계		168

이용 형태별 검출 건수의 경우 표6과 같이 라디오는 2,206건이 Reading으로 나타났으며, 확인 불가능한 97건으로 조사되었다. TV는 Reading이 43건으로 나타났으며, 책표지 화면 노출이 16건으로 나타났다.

표 6. 이용 형태별 저작물 검출 건수

Table 6. Number of detections by type of use

구분	이용 형태	건수
Radio	Reading	2,206
	확인 불가	97
	소계	2,303
TV	Reading	43
	화면 노출(글)	3
	화면 노출(이미지)	2
	화면 노출(책표지)	16
	확인 불가	0
	소계	64
총계		2,367

저작물 유형별 검출 건수의 경우 표7과 같이 라디오는 소설, 희곡 및 시나리오가 2,303건 중 1,166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등이 663건으로 28.7%, 시, 동시, 시조, 동시조가 218건, 동화가 130건, 미술, 웹툰이 33건으로 나타났다. TV는 시, 동시, 시조 등이 전체 64건 중 40건인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이 14건으로 나타났다.

표 7. 저작물 유형별 검출 건수
Table 7. Number of detections by work type

구분	저작물 유형	건수
Radio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1,166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등	663
	시, 동시, 시조, 동시조 등	218
	동화	130
	미술, 웹툰	33
	사진	0
	미확인(비어있음)	93
	소계	2,303
TV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	14
	수필, 평론, 논설, 설명, 학술 등	10
	시, 동시, 시조, 동시조 등	40
	동화	0
	미술, 웹툰	0
	사진	0
	소계	64
총계		2,367

3.4 결과 분석

본 조사는 방송에서 활용되는 문학예술 분야의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TV, 라디오 등 방송에서 사용하는 형태와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것이므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조사하면 문학예술 저작물이 더 많이 검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라디오와 TV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이 조사를 통해 실제 확인되었다.

라디오의 경우 모든 채널에서 저작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니터링 조사 결과 평균 230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이 어려운 저작물이 전체 조사된 저작물 중 7.1%인 167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중 저작물명은 확인되나 저작권자 등 작가 정보가 불명확한 것이 81건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정보가 확인이 불가능한 건도 49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저작물의 일부 정보만 확인되거나,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저작물 이용 시 정확한 출처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제작자에게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므로 여러 방송을 조사하게 되면, 확인되지 않았던 미술, 웹툰, 사진 등의 저작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방송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학예술 저작물을 확인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방송사용료를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징수한 사용료의 투명한 분배에 필요한 것이다.

4. 개선방안

첫 번째, 방송에서 사용하는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외국과 유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표8과 같이 어문저작물 중 문학 저작물은 TV와 라디오에서 포괄정산이 진행되지만, 비문학 저작물과 이미지와 같은 예술 저작물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표 8. 방송에서 문학예술 저작물 징수 현황
Table 8. Literary and artistic copyright collection in broadcasting

구분			TV	라디오
어문 저작물	문학	시	징수	징수
		소설/수필	징수	징수
	비 문학	학술	미징수	미징수
		학술 외	미징수	미징수
이미지 저작물	예술	사진	미징수	미징수
		미술(그림/조각)	미징수	미징수
		디자인 등	미징수	미징수
		기타(웹툰 등)	미징수	미징수

두 번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가 문학예술 저작권단체에 저작물 이용을 신청하여 사전 허락을 받는 구조이거나 저작권단체가 방송사에 이용을 허락하고 방송사가 저작물의 방송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한다면 방송 모니터링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송사가 문학예술 저작물의 이용을 사전 신청하여 허락받는 구조가 아니고 문학예술 저작권단체가 이용을 허락하고 방송사가 저작물의 방송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라면 투명한 정산분배를 위한 방송 모니터링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작물 유통 환경이 방송매체에서 OTT, On-Demand 구독 등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므로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문학예술 분야도 음악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

다. 방송에서 사용하는 문학예술 분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정당한 정산 및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산 환경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니터링 조사와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저작물 권리가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저작물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저작물 확인을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공정한 저작물 수익배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음악 분야의 경우 방송사와 음악 권리자단체가 음원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음원 사용 내역을 집계해 해묵은 음악 저작권료 갈등 해소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14], 권리와 이용자인 방송사간의 이해관계 갈등으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 사용료 정산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문학예술 분야의 방송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웹툰 중 그림을 빼고 텍스트(대화 또는 글)만 사용하는 경우 미술저작물의 이용으로 분류한다거나, 음악 중 가사만 이용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의 이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음악 중 시 혹은 동시 등이 가사로 이용되는 경우 어문저작물 중 운문의 이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해외 116개국 225개 저작물 관련 단체를 확인하였으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방송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방송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주요 국가의 경우 문학예술 저작물의 방송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도 외국의 경우처럼 방송사용료 징수 규정 및 관련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음악, 드라마 외에도 우리나라 문학예술 저작물이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방송영역 외에도 OTT, On-Demand 구독 서비스를 포함하여 글로벌 방송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외국의 문학예술 유관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학예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외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학예술 저작자의 저작권 의식 고취와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분쟁사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당한 사용료 정산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되었음(과제명 : 문학예술 저작물의 정산·분배를 위한 방송 모니터링 기술개발, 과제번호 : RS-2023-00270043, 기여율: 100%)

참 고 문 헌

- [1]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Korea Copyright Commission(201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42809>
-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1).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3
- [3] Korea Copyright Commission, “WIPO Copyright Treaty”, Korea Copyright Commission(201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42915>
- [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2022 Broadcasting industry survey repor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2023), ISSN 1975-7433.
- [5] Koo Jahyun, Park Sohyun, Lee Gayoung, Lee Changkeun, Lee Yongkwan. “Changes in the OTT market and content industry competitiveness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22).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891
- [6] Cisac.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3”,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2023).
<https://www.cisac.org/services/reports-and-research/global-collections-report-2023>
- [7] Cisac. “Cisac Global Collections Report 2023”,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2023).
<https://www.cisac.org/services/reports-and-research/global-collections-report-2023>
- [8] Lee Dae hee. The necessity of rational use of music for broadcasting. (2023). Lawtimes.
<https://www.lawtimes.co.kr/news/173094>
- [9] Lee Dae hee. The necessity of rational use of music for broadcasting. (2023). Lawtimes.
<https://www.lawtimes.co.kr/news/173094>
- [10]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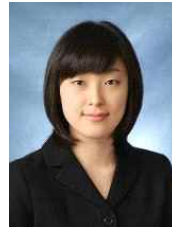
- Copyright Stats”, Korea Copyright Commission(2023). ISSN 2287-5344.
- [11]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2 Copyright Stats”, Korea Copyright Commission(2023). ISSN 2287-5344.
- [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2 Copyright Stats”, Korea Copyright Commission(2023). ISSN 2287-5344.
- [13]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2 Copyright Stats”, Korea Copyright Commission(2023). ISSN 2287-5344.
- [14] An Ho cheon. Long-standing copyright conflict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and music rights holders’ groups resolved with DNA DB. (2021). etnews. <https://www.etnews.com/20210810000172>.

저 자 소 개



박천웅(Park, Cheonwoong)

2015.2 국립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2007.12-2009.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7-2023.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3.3-현재 : 약학정보원 실장
<주관심분야> 저작권 활용 및 공정배분



전진영(Jeon, Jinyoung)

2022.2-현재 : 국립인천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2011.4-현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심분야> 저작권산업, 활용, 공정분배



김덕희(Kim, Dockhee)

2000.8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박사
2017.3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주관심분야>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김시열(Kim, Siyeol)

2012.8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7.6-2012.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6-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주관심분야> 저작권 분쟁, 실질적 유사성